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193 호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07년 월 일<br>(제 회) |

##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|
| 제출연월일 | 2007년 12월 3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7년 12월 3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 1. 제안이유

- 2008. 1. 1일 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, 시·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함.(안 제2조)
-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

### 3. 제정근거 : 기초노령연금법

### 4. 조 례 안 : 불 임

### 5. 관계법령 : 불 임

##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부담기준)**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, 시·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.

**제3조(부담기준 변경 등)** 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기초노령연금법

**제19조 (비용의 부담)**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1.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.
2.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상호 분담하되,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□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

**제16조 (비용의 부담 등)** ①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별로 부담하는 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는 매년 시·군·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부담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,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한다.

③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.